

## 「관광진흥법」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

### 1. 여행업 보증보험(안 제18조제1항 및 제6항, 안 별표 3, 안 별지 제47호서식)

#### 가. 개정 이유

- 여행업체 사고 시 여행객 피해 보호를 위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변경하고, 여행업 관할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증보험 등의 가입 갱신 기간이 도래하는 여행업체에 대해 갱신안내를 하도록 근거규정과 필요 서식을 마련하며, 관광안내업의 가입금액 기준을 신설함

#### 나. 개정 내용

- 여행업 보증보험의 손해배상 범위를 “여행 일선과 관련한 사고”에서 “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”로 변경함(안 제18조제1항 개정)
- 여행업 관할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증보험 등의 가입 갱신기간이 도래하는 여행업체에 대해 갱신안내를 하도록 근거규정과 필요한 서식을 마련함(안 제18조제6항 개정 및 안 별지 제47호서식 신설)
- 관광안내업의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기준을 신설함(안 별표 3 보증보험등 가입금액(영업보증금 예치금액) 기준 개정)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여행업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

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### 2. 관광통역안내사 및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 개정(안 제46조의 2, 안 별표 14~별표 16, 안 별지 제39호의5서식)

#### 가. 개정 이유

-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증 발급근거를 마련하여 자격증 보유자가 부족한 어권에 신속하게 자격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, 역량있는 자격자 배출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의 합격기준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

#### 나. 개정 내용

-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의 시험과목 중에서 국사를 한국사능력시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하고, 국사를 제외한 시험과목의 배점비율을 조정함(안 제46조의2 신설 및 안 별표 14 개정)
- 태국어, 베트남어, 말레이·인도네시아어, 아랍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외국어시험의 합격 점수를 다른 언어와 동일하게 개정함(안 별표 15 개정)
-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의 면제기준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자격의 유효기간이 있는 한시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면제하는 과목을 신설함(안 별표 16의1의바 신설)
-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서식을 개선하고,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자격증 서식을 신설함(안 별지 제39호의5서식 개정 및 신설)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역량있는 관광안내 자격자 배출로 질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
- 관광통역안내사 단기수급불균형 해소로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

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